

## 제95회 목포시의회 회의록

1. 개 의 : 단기 4292년 5월 22일 상오 10시 15분
2. 폐 의 : 단기 4292년 5월 22일 하오 4시 30분
3. 장 소 : 목포시의회 의사당
4. 사 회 : 의장 김 삼 성
5. 출석의원 : 재직 16명 중 출석의원 14명  
결석 강영락, 이정권 의원
6. 출석공무원 : 시장 하동현, 부시장 이병규 및 각 과장  
교육감 박세문 및 사무장

### 7. 의사일정

#### ◆보고사항

- (1) 제94회 제1, 2, 3차 회의록 통과
- (2) 청원서 접수 상황보고 (주간 향도사로 부터)

#### ◆부의안건

- (1) 단기4292년도 제2회 목포시 일반회계 세입 세출 추가 경정예산안
- (2) 단기 4292년도 제1회 목포시 수도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
- (3) 단기 4292년도 제1회 목포시 도선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
- (4) 단기 4292년도 제1회 목포시 공익 전당포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
- (5) 단기 4292년도 제1회 목포시 국민주택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
- (6) 단기 4292년도 제1회 목포시 재건축주택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

(7) 단기 4292년도 제1회 목포시 교육위원회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

(8) 목포시장 설치 조례안

(9) 목포시 묘지 및 화장장 사용조례 중 개정안

(10) 목포시 중요재산 취득의 건(보광동 도로 부지용)

## 8. 토의사항

◎ 제94회 제1차 회의록 통과

서기 박찬대 낭독 이의 없음으로 통과

◎ 제94회 제2차 회의록 통과

서기 박찬대 낭독 이의없음으로 통과

◎ 제94회 제3차 회의록 통과

서기 박찬대 낭독 이의없음으로 통과

◎ 청원서 접수상황 보고-주간항도(週間港都)분

서기 박찬대 낭독

◇김 상 대 의원

- 소개 발언

◇김 상 태 의원

- 찬조 발언

◇총무과장 장 건 식

- 본건 청원인이 지적한 대안동 소재 공무원 배급소는 당 의회의 결의를 얻어 매각처분토록 된 것으로서 방금 공매입찰에 부하도록 공고중에 있습니다.

◇정 응 표 의원

- 매각결의를 한 것은 상당한 오랜 시일이 경과하였는데 본 청원서가 제기 되자 갑자기 공매공고를 한다는 집행부의 근본이유가 나변(那邊)에 있는 지 해명하여 주기 바란다.

◇하 시장

- 본건 공매공고결재도 금조(今朝)에사하였다. 주간항도사에서는 이 거룩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착안하여 청원까지 한 것을 감사하게 느끼는 바이며 공매공고는 즉시 취소하겠다.

◇정 응 표 의원

- 방금 청원 요지의 대상이 되는 불행한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적인 입장을 고려하여 본 일이 있는지 교육감이 답변하여 주기 바란다.

◇박 교육감

- 앞으로 연구하여 보고하겠습니다.

◇정 응 표 의원

- 본건 하시장의 증언도 있는 바이오니 집행부에 이송 처결토록할 것을 동의하다.

- 재청에 이어 삼청이 있었음. 표결결과 만장일치 가결

◇의장 김 삼 성

- 각 부의안건 상정선언

◎ 단기 4292년도 제2회 목포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

◇김 상 대 의원

- 저번 개최하였던 제94회 의회도중 퇴장하였던 소감으로 영구차 조례를 통과할 적에 재석의원 14명중 7명이 거수하였는데 의장은 8표라고 선언 통과시키는 편법적 사회를 하는데 불만을 품었다. 앞으로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부탁하는 바이다.

◇김 의장

- 의장은 가부인 동수 경우 결정권이 있다. 결국에 사회를 맡았던 본인의 표까지 8표가 아니겠는가.

◇김 창 희 의원

- 영구차 조례안 및 일반 회계 추경에 대하여 전문위원회에서 무수정 통과 시킨 것을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통과시켰다는 것은 너무 독선적인 처사라고 보아지며 내무위에서 달선각 신축비를 삭감한 이유를 모르겠다.

- 본건 각 부의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동의하다.

- 재청..삼청이 있었음. 표결결과 만장일치 가결

◇의장 김 삼 성

- 각 상임위원회를 개최키 위하여 12시까지 1시간 동안 정회할 것을 선언  
( 상오 11시 현재 )

- 속개 선언하다. ( 하오 12시 15분 )

◎ 각 상임위원회 종합심의보고

◇박 내무위원장

- 각 안건 공히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 내무위원회에서 원안통과를 보았다는 요지의 보고가 있었음.

◎ 단기 4292년도 제2회 목포시 일반 회계 세입 세출 추가 경정예산안

◇명 남 철 의원

- 본 건 제반 절차를 생략하고 원안 무수정 통과 동의하다.

- 재청..삼청이 있었다.

◇김 남 진 의원

- 소정 절차대로 축조심의를 할 것을 개의

- 재청..삼청이 있었다. 개의표결 재석14명 중 가 5표 부결

◇김 경 인 의원

- 문사나 산업 등 전문위원회에서는 그 전문적인 분야에서만 심의하는데 그치지마는 내무위원회에서는 전반적인 시야를 넓혀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보아질 적에 저반 내무위원회에서 일부 수정한 내용을 전연 무시하고 그대로 제안한 집행부의 태도는 유감천만인 것이다.

- 예를 들면 소방비의 목적세 잉여액을 사업비에 충당치 않고 피복비에 계상하였다는 것과 85만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관인분치(官印分置)의 대가로 호병과를 이전한다는 것 등 이해하기 곤란한 것이다.

- 명남철 의원 동의 표결결과

재석 14명 중 가 7표 부결

◇김 상 태 의원

- 관인 분치에 대한 발언

◇정 응 표 의원

- 찬조발언과 아울러 소방비 피복대 계상 문제에 대하여는 본 의원도 김경인의원의 의견과 동일하다. 그러나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적에 일반 안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삭감시킨다는 것은 의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우려가 있다고 사료되어 묵인하였던 것이다.

◇조 양 순 의원

- 소방비는 시설면에 치중하여 「단구」 하나라도 더 만들도록 하여야 될 것이다.

◇김 창 희 의원

- 호병과 이전관계 85만원만을 삭감하고 기타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하다.

- 재청이 있었음.

◇김 남 진 의원

- 본 건 예산심의는 일독회, 이독, 삼독회의 정당한 절차를 받아야 될 것이다.

◇김 상 대 의원

- 호병과의 직인 문제는 오랜 시일을 두고 우리의회에서 논의된 것이다. 이에 대한 경위를 집행부에서 답변하여주기 바란다.

◇호병과장 정 태 로

- 거 91년도초에 이 문제를 위요하고 의회에서 논의된 즉시 도에 문의하였던 바 동일 청사내에 관인 1개이상을 비치할 수 없다고 거절당하였습니다. 그러나 이 문제를 재호소하여 그 결과를 차후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.

◇김 성 균 의원

- 김창희 의원 동의 찬성발언

◇김 경 인 의원

- 김남진의원외의 축조심의안에 찬조발언

◇천 철 수 의원

- 김창희 의원의 동의에 소방비중 의용소방대 간부용 피복비 111,000원과 모자대 12,000원을 제외한 318,000원을 삭감할 것을 첨가한다.

(동의 집 수락)

- 김창희 의원의 동의 표결결과 만장일치 가결

◎ 목포시장 설치조례안

◎ 목포시 묘지 및 화장장 사용 조례 중 개정안

◎ 목포시 중요재산 취득안

◇의장 김 삼 성

- 상정선언

◇김 창 희 의원

- 제반절차를 생략하고 원안 무수정 통과 동의하다.

- 재청 ..삼청이 있었음. 표결결과 만장일치 가결

◎ 단기 4292년도 제1회 목포시 수도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

◎ 단기 4292년도 제1회 목포시 도선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

◎ 단기 4292년도 제1회 목포시 공익 전당포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

◎ 단기 4292년도 제1회 목포시 국민주택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

◎ 단기 4292년도 제1회 목포시 재건주택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

◇의장 김 삼 성

- 상정 선언

◇김 경 인 의원

- 수특회계의 세계잉여금이 2백만원이 이월되었는데 과반 내무위의 예산심의석상에서 의장은 각 동에 출신의원과 연관시켜 공동수도 1개소씩을설치하여 준다는 공약을 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반의 추경에 반영 안 된 이유를 의장이 답변하여 주기 바란다.

◇의장 김 삼 성

- 차후 기회에 반영시킬 용의가 있다는 시장의 내약이 있으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란다.

◇김 성 균 의원

- 전의 5건을 일괄하여 제반절차를 생략하고 원안 무수정 통과 동의하다.
- 재청..삼청이 있었음. 표결결과 만장일치 가결

◎ 단기 4292년도 제1회 목포시 교육위원회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

◇의장 김 삼 성

- 상정 선언

◇김 경 인 의원 질문

- (1)영선비 해당액 1,263,360환을 일반 경상비로 충당시켰는데, 이는 법령에 위배된 처사가 아니겠는가.
- (2)교비(校費) 120만환을 삭감한 이유 여하

◇조 양 순 의원

- 가공적인 숫자를 계상한 예비비에서 1,364,000환을 감한 이유 여하

◇김 상 대 의원

- 문사위원회에서 원안통과로 심의한 경위 설명이 있었음.

◇김 성 균 의원

- 보충발언

◇김 상 태 의원

- (1)요즈음 각 학교에서 용지대로 학년별 구별하여 600환, 500환, 300환,



200환 씩 징수하고 있는 사실을 아는가.

- (2)수련장(修鍊帳) 등을 강매하고 있는 사실을 아는가.

◇정 응 표 의원

-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이 마당에 이러한 잡부금 때문에 취학을 못하고 있는 적령아동에 대한 대책을 여하히 하고 있는가.

◇박 교육감

- 잡부금 단속은 극력하고 있다. 이러한 사례이라면 그 즉시 연락하여 주기 바란다.

◇김 남 진 의원

- 각 학교 잡부금 취체조사위원을 5인 정도 구성할 것을 동의하다.
- 재청...삼청이 있었음.

◇조 양 순 의원

- 사종(斯種)조사를 하여 비행교원이 발견되더라도 현교육감의 능력으로는 하등의 인사조치를 못할 것으로 본다.

◇정 응 표 의원

- 본의원이 발언한 미취학 아동의 대책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이 석연치 않으니 구체적인 답변있기를 요망한다.

◇명 남 철 의원

- (1)영선비 해당액을 일반경상비로 계상할 것
- (2)교비 120만을 삭감하여 교부(校夫)와 양호원을 둔 것
- (3)영선기사와 재산관리직원의 경우 등 여사한 경비를 감하여 단일교실이라도 증축하는데 치중하여 주기 바란다.

◇이 사무장 답변

- (1)미취학 아동은 앞으로 무료로 입학시키겠습니다.

- (2)부정있는 교사에 대한 조치는 발견 즉시 내신하여 엄단토록 하겠습니다.

◇김 상 대 의원

- 영선비 해당액 중 일반 경상비로 계상시킨 1,263,360환과 교비 삭감액 120만환을 차후 추경에 보충시킬 용의가 있는가.

◇이 사무장

- 영선비 해당액은 돌릴 수 있으나 교비 120만환은 년도말이 가까워야 될 것입니다.

◇김 상 대 의원

- 토론종결 동의하다.

- 재청...삼청이 있었다. 표결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.

◇김 경 인 의원

- 징세비에서 1,356,000환을 삭감하고 기타 원안 통과할 것을 수정 동의하다.

- 재청...5청까지 있었음. 7청없음으로 폐기

◇김 상 대 의원

- 영선비 해당액 1,263,360환을 차후 기회에 돌리도록 할 것을 조건부로 원안 통과 동의하다.

- 재청에 이어 삼청이 있어 표결결과 재석 14명 중 가 8표 가결

◇김 경 인 의원

- 래 6월 중에 개최되는 정기의회가 개막될 것인데 이 기회에는 결산심의에 수반한 사무감사를 실시함과 아울러 이의 일정은 의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하다.

- 재청...삼청이 있어 표결결과 만장일치 가결

◇김 창 희 의원

- 대 정병조씨 관계 토지 승소분 15만평의 부지에 적당한 장소를 선택하여  
공설운동장 시설이 시급한 바 이에 따르는 경비는 중동, 연동, 죽교동의 3개  
시장과 시장, 부시장 관사를 제외한 제관을 매각 처분하여 충당토록 할 것을  
동의

◇정 응 표 의원

- 이 문제는 연구과제로 보류하였다가 오는 정기의회에 있을 사무감사 등  
을 통하여 검토하기로 일응 보류함이 좋을 것 같다.

(동의집 수락)

◇의장 김 삼 성

- 김남진 의원 동의인 학교관계 조사위원으로 김남진, 김상태, 천철수, 박  
두순, - 김삼성 5의원을 지명

◇의장 김 삼 성

- 폐회 선언하다.

( 하오 4시 30분 )

위 회의록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이 서명 날인함.

단기 4292년 5월 일

시의원 박 두 순

시의원 김 상 대

작성자 서기 주 도 식